

#### 4.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가산점(1.00점 만점)

가. 학년도 단위로 1회 0.1점씩 가산(평정대상기간 : 매년 03.01.~다음해 2월말)

\* 교육공무원 기타 평정과 같이 '16년도 실적은 한시적으로 1년 2개월('16.01.01~'17.02.28) 간 평정하며, 이후 '17년부터 학년도 단위 적용 (교육부 교원정책과-6072(2016.10.06.)호)

나. 2013.1.1.이후 실적부터 적용(승진후보자 명부적용은 2014.01.31.자부터임)

#### 선택가산점

##### 1. 1급 정교사 또는 1급 보건교사의 보직교사(부장교사) 근무경력(2.00만점)

가. 1월마다 0.027점씩 가산(1개월 미만은 일 0.0009점)

- 1급 정교사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 포함
-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  
(승진규정, 대통령령 제17635호, 2002.06.25.)
- 1997.12.31.이전 경력에 대한 상한점은 1.43점임

나.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시의 보직교사 근무경력 인정(2005. 12월 평정 시부터 인정)

- 보직교사 임면사항을 보고하고, 학교 급별 학급 수에 따른 보직교사를 임명한 근거서류를 갖춘 경우 인정

##### 2.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경력(0.75점 만점)

가. 장학(교육연구)사 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에 한함

나. 현직 장학(교육연구)사의 경우에는 교감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점 평정

- 1월마다 0.012점씩 가산(1개월 미만은 일 0.0004점)

다. 1997.12.31.이전 경력에 대한 상한점은 0.45점임

라. 장학(교육연구, 임기제장학)사 경력이 있는 교사의 가산점 평정은 1월마다 0.012점씩 가산(1개월 미만은 일 0.0004점)

- 단, 2025.3.1.자 이후의 임용부터 적용함

##### 3. 도서·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 경력(1.50점 만점)

◦ 가산점 부여 기준

지역 구분		월 평정점	일 평정점	비 고
'67.4.1.~ '85.12.31.	'86.1.1.이후			
특지	가 지역	0.045	0.0015	◦ '97.12.31. 이전 경력 : 교육부장관 인정점과 교육감 인정점을 동시 평정(월/일 평정점×2) ◦ '98.1.1.~ 이후의 경력 : 교육부장관 인정점만 인정
갑지	나 지역	0.039	0.0013	
을지	다 지역	0.033	0.0011	
병지	라 지역	0.027	0.0009	
평정 상한점		1.50		

##### 4. 농·어촌지역 및 공단지역 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(1.50점 만점)

가. 면 지역의 농·어촌지역학교 근무경력('09.02.28.이전 읍·면학교에 근무한 경력 포함)은 1월마다 0.015점(1개월 미만은 일 0.0005점)을 가산한다.